

주요국의 공정거래제도 운영

본 협회 조사부

미 국

미 FTC와 인텔사, 반트러스트 소송에서 화해

인텔사와 미국 연방거래위원회 (FTC) 변호사들은 3월 8일, 인텔사에 대한 반트러스트 소송의 화해안을 제출함으로써 3월 9일 워싱턴에서의 재판 개시를 모면하였다. 그리고 3월 17일, FTC 전체회의는 당해 컴퓨터칩 제조업체가 자신을 제소하는 고객들과의 거래관계를 단절하는 것을 금지하는 화해안을 승인함으로써 이 사건을 해결하였다.

동 회사와 FTC 경쟁국은 동 회사가 위법하게 3개 경쟁업체 - 디지털 이큅먼트사, 인터그래프사 및 컴팩사이며, 디지털 이큅먼트사는 현재 컴팩사의 소유로 되어 있음 - 를 위협하여 영업비밀을 제공토록 하였다는 내용의 제소를 해결하기 위해 당해 합의에 도달하였다. 동 위원회 소속 판사가 주심이 될 당해 재판은 대략 3개

월 정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었었다.

『“인텔사는 동 회사와 지적재산권 분쟁중인 업체와의 거래를 거절할 수 없다.”』라고 FTC 위원장인 Robert Pitofsky는 3-0의 표결 결과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밝혔다. 당해 합의가 없을 경우 인텔사는 독점력을 이용하여 고객들로 하여금 보상없이 영업비밀을 인텔사에 넘기도록 압력을 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Pitofsky 위원장은 밝혔다.

FTC는 인텔사가 위의 3개 업체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고도의 기술을 넘겨받을 목적으로 곧 출시될 마이크로 프로세서에 대한 고급 기술 정보를 이들 업체에게 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동 위원회는 인텔사의 행위가 『“경쟁업체들에게 압력을 가하여 지적재산권을 넘겨받기 위한 독점력의 행사”』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인텔사는 출시될 제품에 대하여 어떠한 비밀을 고객들에게 공개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합법적이라고 주장하여 왔었다.

한편 인텔사는 FTC가 동 회사와 FTC 변호사들이 화해안에 합의하였음을 발표하였을 때에는 공표되지 않았던 중요한 예외를 인정받았다. 이

예외에 따르면 인텔사의 고객이 인텔사를 제소하고 동 회사의 컴퓨터칩 판매를 금지하는 금지명령을 청구할 경우 인텔사는 동 고객의 사업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견본 및 기술정보의 제공을 보류할 수 있다.

Pitofsky 위원장은 어느 회사도 거래상대방을 봉쇄하도록 허용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우리는 인텔사의 편도, 인텔사에 도전하는 회사의 편도 아니며 오로지 소비자의 편일 뿐이다”라고 Pitofsky는 덧붙였다.

인텔사의 사장이자 최고경영자인 Craig Barrett는 “우리는 이번 합의를 양측 모두에 대한 승리로 보고 있으며 동 합의가 우리의 지적재산권을 존중하고 있음에 만족하고 있다”라고 하였다. “이는 양측 당사자들이 수용할 수 있는 내용이며 또한 인텔사와 FTC간의 건설적 대화의 결과이다.”

당해 화해에 대하여 일반대중은 60일 내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특별한 이의제기 없이 60일이 경과하면 동 위원회는 이를 종국적인 것으로 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FTC는 동 회사가 재판에서

완전히 면제되지는 않을 것임을 시사하였다. 『위원회가 조사중인 헌안들이 아직 남아 있다』라고 FTC의 성명은 밝혔으며, 이는 동 회사에 대한 보다 광범한 반트러스트 조사를 지칭하는 듯하다. 『위원회의 직원들은 이러한 우려를 해결하기 위하여 신속하게 헌신적으로 일하고 있다』라고 경쟁국장인 William J. Baer는 말하였다.

워싱턴 D.C.의 변호사로서 인텔사의 몇몇 경쟁업체를 대리한 Steve Newborn은 『보다 광범한 사건이 신속하게 조사되고, 결국 보다 광범한 영역, 즉 마이크로프로세서와 네트워크 인터페이스에서의 독점력 남용 문제와 관련하여 인텔사를 상대로 제소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였다.

Newborn은 당해 화해안에 대해 놀라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이는 부분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사를 상대로 법무부가 진행중인 반트러스트 소송에 기인하였다고 보여진다. 연방법원에서의 5개월 이상의 증언절차 동안 소프트웨어 제작회사인 마이크로소프트사는 내부 전자메일 및 일부 임원들의 증언을 통한 폭로로 곤란에 직면하였다. 당해 소송은 현재 6주간의 휴정기간 중에 있다.

이러한 반트러스트 사건 외에도, 사생활보호를 주장하는 단체들의 연합이 FTC에 대하여 인텔사의 새로운 칩인 펜티엄III에 고유 식별번호를 사용하려는 동 회사의 결정을 조사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당해 칩은 고유 번호가 내장되어 있는데, 인텔사는

이것이 전자상거래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고안된 것이라고 하고 있다. 그러나 사생활보호론자들은 이 칩으로 인해 컴퓨터 사용자들이 인터넷을 이용하는 동안 마케팅업체 등이 이들을 은밀히 추적할 수 있게 된다고 하고 있다.

- '99. 3. 8, The New York Times
- & '99. 3. 18, Los Angeles Times

**미 행정부,
AOL - 넷스케이프간 기업결합
저지하지 않기로**

미국 법무부는 3월 12일, 아메리카 온라인(AOL)사와 넷스케이프사간의 43억달러 규모의 기업결합에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세계 최대 온라인 서비스 제공업체인 AOL사가 넷스케이프사를 취득할 경우 첨단기술업계 전반에 걸쳐 상당한 연계를 갖는 단일한 인터넷 회사가 탄생하는 셈이며, 이 회사는 주요 영역에서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지배적 지위에 도전하게 될 것이다.

또한 별도의 합의를 통해, 선 마이크로시스템즈사는 AOL사가 동 회사의 컴퓨터를 구입하는 대가로 넷스케이프사의 기업용 소프트웨어의 배포를 담당하게 될 것이다.

법무부는 성명에서 반트러스트국이 당해 기업결합 제안에 대한 조사를 마쳐 가고 있다고 하였다. 『동국은 기업결합 및 제휴 어느 것도 반트

러스트법 위반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결론지었기 때문에 당해 거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라고 동 성명은 밝혔다.

넷스케이프사의 주주들은 당해 기업결합에 대한 표결을 위해 3월 17일 회합을 갖기로 예정되어 있다.

AOL사의 대변인인 Jim Whitney는 동 회사는 법무부의 결정을 환영하며 3월 17일의 넷스케이프사 주주들의 표결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였다. 당해 기업결합은 다른 규제당국의 승인은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러한 제휴는 마이크로소프트사에 대한 극적인 새로운 경쟁상태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인데, 넷스케이프사에 대한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영업 전략이 매우 공격적이었던 관계로 연방정부는 반트러스트법 위반으로 동 회사를 기소한 상태이다. 지난 10월에 개시된 당해 소송은 미국 연방지방법원에서 1개월의 휴정기간 중에 있다.

넷스케이프사의 "Netcenter" 웹사이트는 매달 2,000만명의 방문자를 보유한, 인터넷상에서 매우 인기 있는 4대 사이트 중 하나인데, AOL사, 마이크로소프트사 및 야후사의 사이트가 나머지 3개 사이트이다.

기업결합 제안에 따르면 AOL사는 넷스케이프사의 선구자격인 내비게이터 브라우저 소프트웨어를 취득하게 될 것인데, 이 소프트웨어는 1994년에 도입되었고 인터넷 대중화에 기여하였다. 이 소프트웨어는 수백 만의 사람들이 웹상의 정보를 보기 위해

이용하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인터넷 소프트웨어는 넷스케이프의 소프트웨어와 직접적 경쟁관계에 있으며, 마이크로소프트 네트워크 온라인 서비스는 크게 성공하지는 못하였지만 아무튼 AOL의 경쟁업체이다.

많은 산업계 관측통들은 넷스케이프 - AOL 기업결합이 현재 계열중인 마이크로소프트사를 상대로 한 법무부의 반트러스트 소송을 악화시킬 수도 있다고 믿고 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사는 이번 기업결합은 첨단기술 산업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으며 매우 경쟁적임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여 왔다. 마이크로소프트사는 지난 달 당해 기업결합과 관련한 문서를 전달받기 시작하였으며 ('99년 2월) 소환에도 응하였다.

■ '99. 3. 12, Los Angeles Times

**미국·이스라엘,
반트러스트 협력협정 서명**

미국과 이스라엘은 양국에서의 가격고정 및 기타 위법한 독점거래 관행을 조사하는 데 협력할 것이라고 미국의 Janet Reno 법무장관과 이스라엘의 통상산업부 장관이 3월 15일 밝혔다.

Reno 장관은 이번 반트러스트 협력협정으로 인해 법무부와 연방거래위원회(FTC)가 이스라엘의 경쟁당국과 협력하여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이

용이해질 것이라고 말하였다.

비록 반독점법은 이스라엘에서 수십 년간 존재하여 왔지만, 소비자 보호를 위한 집행은 비교적 새로운 생각이라고 이스라엘 Natan Sharansky 장관은 법무부에서 거행된 서명식에서 언급하였다.

이스라엘의 통상산업부는 일반적으로 기업들의 옹호자로 간주되고 있으나, 『“동 부의 사명에는 소비자 권리 보호도 포함되어 있음은 종종 간과되고 있다”』라고 Sharansky 장관은 말하였다.

당해 협정의 핵심은 양국이 기밀사항이 아닌 반트러스트 정보와 증거를 공유하는 것이라고 Joel Klein 법무부 반트러스트국장은 말하였다.

FTC 위원장인 Robert Pitofsky도 당해 협정안에 서명하였는데, 이는 이스라엘로서는 첫번째이며 미국로서는 다섯번째이다. 미국과 반트러스트 집행 협력협정을 체결한 기타 국가들은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독일 및 유럽연합이다.

■ '99. 3. 15, The New York Times

E U

**유럽위원회, 스포츠 TV
중계계약에 대해 조사 경고**

유럽위원회의 경쟁담당위원인

Karel Van Miert는 2월 24일, 스포츠계의 가장 강력한 통치기구들과 방송사들간의 배타적 텔레비전 중계계약을 면밀히 감시할 것이라고 함으로써 이 기구들에 대하여 경고를 발하였다.

이는 기간이 1년 이상인 모든 배타적 텔레비전 중계계약에 대한 검토를 포함한다. 대부분의 스포츠 텔레비전 중계계약은 기간이 3년 내지 4년이며, 이는 거의 모든 계약이 조사대상이 될 것임을 의미한다.

유럽연합의 집행부격인 동 위원회의 우려사항은 스포츠 연맹들이 스포츠계에 대한 자신들의 전적인 또는 이에 가까운 통제를 남용하여 텔레비전 중계권에 대한 배타적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당해 시장에서의 경쟁을 봉쇄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Van Miert는 스포츠 중계계약 감시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접근 방법은 향후의 계약에 주로 적용될 것임을 시사하였다. 그는 British Sky Broadcasting(BSKyB)사와 English Premier League(영국 프로축구 리그)간의 6억7,000만파운드 규모의 4년 계약과 같은 대다수의 장기 계약은, 이러한 계약이 텔레비전 시장이 아직 발달중이었고 경쟁이 격심하지 않았던 시기에 협상되었기 때문에, 인정할 수 있다고 하였다.

동 위원회의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스포츠 방송사 임원들은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스포츠 미디어 컨설팅 회사인 Media Content사의 상무이사인 Jean-Paul de la Fuente는 “만일

Van Miert가 이야기한 것이 '이러한 계약 모두를 검토할 권한을 유보한다'는 뜻이라면 이는 문제가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그는 방송계에서 "사업감각이 있는 자라면" 단지 1년간의 계약에는 서명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다.

그는 텔레비전 방송사들은 시청자를 확보하고 중계 및 프로그래밍에 대한 상당한 투자를 정당화하기 위해 장기계약을 필요로 한다고 하였다. 스포츠 연맹들 또한 수익 흐름에 안정성을 부여하기 위해 이러한 장기계약이 필요했다는 것이다.

스포츠 연맹들로부터 EU의 반트러스트 당국의 장으로서의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Van Miert 위원은 이들 스포츠 연맹들이 EU의 경쟁규칙을 위반하고 있다는 혐의가 있는 약 60건의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

이러한 사건들은 축구 에이전트들이 허가를 얻기 위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은행 보증의 규모에 관한 불만으로부터 프랑스와 벨기에 국내축구 연맹이 프랑스에서 벨기에 팀의 "흠경기"를 갖는 것을 금지당한 데 대한 이의제기를 포함하고 있다.

동 위원회는 또한 Formula One 자동차 경주의 프로모터인 Bernie Ecclestone이 협상한 상업계약의 일부에 대해서도 조사중이다.

■ '99. 2. 25, Financial Times

일본

공취위, 젠린사 현장조사 - 주택지도 부당판매 혐의

주택지도 분야에서 80%의 점유율을 갖고 있는 젠린사(본사 키타큐시)가 일부지역의 지도를 부당하게 싼 가격으로 판매하는 등의 방법으로 경쟁업체를 시장에서 배제하려 하였다는 혐의가 있다고 하여, 공정취인위원회는 2월 25일, 사적독점 등의 독점금지법 위반혐의로 동 회사의 본사, 영업소와 판매자회사 등 10개소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벌였다.

주택지도 시장은 지역별로 나뉘어져 있으나 전국적 규모로 제작·판매하고 있는 업체는 젠린사뿐으로,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지역이 많다. 동 회사는 경쟁이 격심한 지역에서 부당 판매로 경쟁상대를 시장에서 몰아내고 시장을 독점하려 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관계자에 따르면 동 회사의 판매루트는 일반 대상 서점판매 외에 사업소와 관공서 대상 방문영업이 있다. 예약판매는 정가보다 10% 정도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외에, 대형 법인수요자들에게는 개별적으로 가격고섭에 응하고 있다.

호쿠리쿠(北陸) 및 시코쿠(四國) 등, 일정한 시장점유율을 갖고 있는 경쟁회사가 있는 지역에서는 영업소

의 결제상한인 10%를 크게 상회하는 할인율로 판매한 예도 있다고 되어 있어, 본·지사가 관련을 맺고 전략적으로 할인공세를 펼쳤다는 혐의가 있다.

주택지도 시장의 규모는 약 250억 엔으로서, 1998년 3월 회계년도의 동 회사 주택지도 매출액은 198억엔이다.

■ '99. 2. 26, 일본경제신문

공취위, 업계 재편에 유연 대응 - 일본석유/미쯔비시석유 기업결합 등 무조건 승인

공정취인위원회는 3월 1일, 4월 1일자로 기업결합 예정인 일본석유사와 미쯔비시석유사의 기업결합을 조건없이 승인한다고 발표하였다. 공취위는 사전상담을 받아 신규진입 및 수입, 경쟁상대 등의 조건을 심사한 결과 「독점금지법의 규정에 위반할 우려는 없다」라고 판단하였다. 해운 대기업들인 오사카 상선미쓰이 선박과 나비스라인간의 기업결합도 조건없이 승인하였다.

두 기업결합 모두 일본 내 일류기업의 탄생으로 이어지는 것으로서, 과잉설비 등의 문제에 직면한 일본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취위가 업계재편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자세를 보였다고 할 수 있다.

일본석유와 미쯔비시석유가 결합

하여 탄생할 회사의 석유제품의 판매 점유율은 전국 기준으로는 최고인 약 25%, 일부 지역에서는 가솔린 등의 점유율이 30%를 넘는다. 그러나 공취위는 「경쟁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하였다. 석유가 국제시황상품인 점 및 기업결합을 결정한 미국 주요 석유회사들인 모빌사와 엑슨사가 일본 내에 거점을 갖고 있는 등, 석유업계가 치열한 국제경쟁에 직면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상선미쓰이와 나비스라인이 기업결합하여 만들어낸 회사도 철광석 및 목재의 부정기선 수송량 점유율이 일본 내에서는 35%로 최고가 된다. 그러나 공취위는 경쟁상대로서 외국의 해운업체도 포함되는 것 등을 이유로 당해 기업결합을 승인하였다.

공취위는 올해 1월 독금법을 개정하여 기업결합 심사기준을 대폭 완화하였으며, 이는 개정독금법 하에서의 최초의 대형기업결합 승인이 된다.

작년 10월에 치치부오노다(秩父小野田)사와 일본시멘트가 기업결합하여 발족시킨 태평양 시멘트에 대하여서는, 국내의 점유율이 약 40%에 달하는 점을 이유로 공취위는 홋카이도 및 간토(關東), 오키나와 등의 지구에서 「시멘트 판매의 경쟁을 제한한다」고 지적하였고, 이를 받아들여 태평양 시멘트는 일부의 시멘트 비축·출하거점을 폐기 및 양도하겠다는 등으로 회답한 전례가 있다.

■ '99. 3. 2 일본경제신문

캐나다

캐나다 연방지방법원, 일본기업에 대해 국제카르텔을 하였다 하여 36만불 벌금 부과

캐나다 산업부 경쟁국은 지난 2월 15일 일본의 「등택약품(藤澤藥品)」사(오사카 도쿄 소재)가 글루콘산나트륨에 대하여 가격협정 및 시장분할을 위한 국제적 공모에 참여하였다고 하여 고발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캐나다 연방지방법원이 유죄를 인정, 36만불의 벌금을 부과하는 판결을 하였다. 상기 공모는 캐나다를 포함할 세계적 규모의 가격협정과 시장분할로서 미국·유럽 및 일본의 제조업자가 관계되었다. 글루콘산나트륨은 주로 산업용세정과 금속처리약품 및 콘크리트 응고조정제로 사용되고 있다. 경쟁국이 입수한 증거에 의하면 범위 반기간 중 캐나다에서의 당해 제품의 매출액은 캐나다달러로 1,020만불이었다.

상기 판결은 1998년 10월 글루콘산나트륨 및 쿠엔산에 대한 가격협정 및 시장분할을 하였다 하여 스위스기업 Jungbunzlauer International A.G.에 대한 유죄판결에 이은 것이다.

「최근 수개월간 캐나다와 기타국에서 행하여진 위법한 카르텔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다수 이루어졌다. 이러한 범죄적 카르텔은 캐나다 경제에 손해를 가져오게 되고, 캐나다 국민에게 상품구입시 고액의 지불을 강요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범죄적 카르텔을 차단하기 위하여 엄한 벌금을 부과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흰켄슈타인 경쟁국장은 언급했다. 연방지방법원은 「등택약품」에 대하여 이러한 경쟁법 위반이 없도록 금지명령도 내렸다.

(주)등택약품은 1998년 2월 25일 미국 법무부로부터 글루콘산나트륨의 가격카르텔을 하였다 하여 소추를 받은 후 2,000만불 벌금을 부과하는 데 합의한 바 있다.

■ '99.2.15, 일본 공정취인위원회
사무총국 관방국제과

기 타

영국 제한적 관행법원, 약국들의 가격고정 관련 본안심리 결정

영국 공정거래청이 영국 내 최후의 가격고정 협정을 폐지하고자 하는 법적 쟁송의 첫 무대에서 승리를 거둔 3월 11일, 영국의 12,000여개 약국들은 이 다름의 장기화에 대비하기 시작하였다. 제한적 관행법원은 3월 11

일 10억파운드(16억달러) 규모의 "일반약품(의사의 처방 없이 약국에서 판매할 수 있는 약품; over-the-counter(OTC) drugs)" 및 비타민 시장에서의 최저재판매가격표시제 폐지 여부에 대한 판결을 위해 본안심리의 개시를 허가하는 결정을 내렸다.

1995년 일반약품 및 비타민의 가격 설정에 대한 조사를 개시하였으며 작년엔 법원에 심리를 청구하였던 공정거래청(OFT)은 당해 결정이 『"상당기간 불필요하게 높은 가격을 적용받아야 했던 소비자들에게는 좋은 소식"』 이라고 하였다.

공정거래청장인 John Bridgeman은 거의 30년 전에 합의된 이러한 가격 고정 협정으로 인해 소비자들은 연간 2억파운드의 피해를 입었다고 추정하였다.

80개 의약품의 가격을 인하함으로써 OFT의 초기 조사를 촉발하였던 슈퍼마켓 그룹인 Asda사는 당해 법원의 결정이 인위적으로 높은 일반약품 가격의 증언을 고하는 것이라고 환영하였다.

Asda사의 사장인 Allan Leighton은 "제약회사들은 이것이 암시하는 바를 받아들여 보건제나 다른없는 재판매 가격 강제를 자발적으로 중지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이번 결정은 약사 및 제약회사들을 대표하는 Community Pharmacy Action Group의 회장인 David Sharpe 에게는 당황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한때 약제사들이 지배하였던 100억

파운드 규모의 향수류, 화장품 및 일반약품 시장의 40%를 점하고 있는 슈퍼마켓의 할인판매는 영국 약국 3분의 1의 폐점을 야기할 수 있다고 그는 말하였다.

Sharpe 회장은 이번 결정이 본안심리의 결과를 예단케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으며 중극적인 승소를 자신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한 당해 협정에도 불구하고 영국 소비자들은 일부 일반약품에 대하여 유럽 다른 나라들의 소비자보다 적은 비용을 지불하였다는 증거가 있다고도 하였다.

■ '99. 3. 12, Financial Times

멕시코 항공시간 제유, 경쟁당국의 조사로 장래가 불확실해져

멕시코의 2대 항공사인 Mexicana사와 Aeroméxico사의 앞날에 또다시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다.

해외시장 점유율의 저하, 미국 항공사들로부터의 경쟁의 증대 및 지난 달 멕시코 반독점위원회인 CFC가 개시한 이들 두 항공사들의 약탈적 관행에 대한 조사는 멕시코 항공운수산업의 상당부분을 경영하고 있는 지주회사인 Cintra사의 운명에 대한 우려를 재확인시키고 있다.

CFC는 1995년 파산상태였던 항공사들에 대한 일시적 구조조정 조치에 의해 설립된 당해 독점 지주회사를

해산하고자 하고 있으나 어떻게든 Cintra사를 살리고자 하는 다른 정부 부처 및 은행기들의 반대에 직면한 상태이다.

CFC는 경쟁 항공사, 여행사 그리고 조종사들조차 당해 지주회사가 국내노선에서의 지배적 지위를 이용하여 독점적 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Cintra사 소속 항공사들은 멕시코 내 50대 노선의 80%의 교통량을 포함하여 국내 시장의 4분의 3을 점유하고 있다.

일부 분석가들은 당해 회사가 설립시의 조건들을 공개적으로 무시하여 왔다고 하고 있다. Cintra사는 기자재 구입시의 규모의 경제와 같은 시너지 효과를 누리는 것이 허용된 반면 항공사들의 영업은 개별 상태로 유지하여 왔다.

당해 지주회사가 설립된 이후 항공료는 상당히 인상되었으며 여기에는 일부 노선에서의 92% 인상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제트연료 가격에 대한 30%의 정부 보조에도 불구하고 Aeroméxico사와 Mexicana사는 작년 11월 여행사들이 받는 수수료를 10%에서 7%로 인하한다고 발표하였으며, 이는 담합과 관련한 CFC의 즉각적 개입을 촉발하였다.

CFC에 관한 한, 경쟁은 항공운수업에서의 지상명제이다. 이들 항공사들을 분리하는 대신 전세계적인 제휴 통합은 허용함으로써 멕시코를 찾는 관광객 수가 상당히 증가할 것이고 80억달러 규모의 당해 산업도 발전할 것이라고 CFC의 Manuel Sandoval은

언급하였다.

그러나 다른 관계자들은 당해 항공사들을 분리하는 것은 미국 항공사들의 멕시코 시장에서의,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남미 시장에서의 진출을 용이케 할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더욱이 주도적 항공사가 없다면 멕시코 항공사들의 국제무대에서의 진출은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다.

“이들 항공사들은 분리되면 미약하지만 결합되면 상당히 강력한 업체가 된다”라고 마이애미에 거주하고 있는 항공운수업 분석가인 Robert Booth는 말하고 있다. “이들을 분리하는 것은 결정적인 타격이 될 것이다. 왜냐 하면 그렇게 되면 이들은 주요 시장인 미국 시장에서 미국 항공사들과 경쟁할 수 없기 때문이다.”

Mexicana사와 Aeroméxico사는 해외노선 점유율이 1990년 국제노선의 절반에서 현재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으며, 나머지 부분은 미국 경쟁업체들의 지배하에 놓이게 되었다.

이는 지난 2월 미국과 멕시코간에 서명된 새로운 항공편 공유협정의 발효와 함께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동 항공편 공유협정으로 인해 이러한 항공편의 수는 100편에서 5,000편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Cintra사의 항공기 보유대수가 153대에 불과한 현실에서 상당수의 새로운 노선에는 델타 항공 및 유나이티드 항공과 같은 미국 항공사들이 진출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들은 각각 Aeroméxico사 및 Mexicana사와 항공편 공유협정을 맺고 있다.

“Cintra사의 경영진이 동 회사를 멕시코의 주도적 항공사로 만들고자 하는 데에는 잘못이 없다. 우리 회사는 자사 소속의 두 항공사 및 미국의 파트너 항공사들간의 항공편 공유를 증대시키고자 하고 있다”라고 Cintra사의 José Robles는 말하였다. Cintra사는 유나이티드 항공과 독일의 루프트한자 항공이 주도하는 Star Alliance에 합류하기 위해 Mexicana사를 대신해서 협상을 진행중이지만, 이는 Cintra사의 불확실한 장래로 인해 난항을 겪고 있다.

멕시코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Cintra사 지분 18%를 매각할 것인지, 그 시기가 언제인지는 여전히 확실치 않다.

“두 항공사를 묶어 매각을 제외하는 것이 정부의 투자금액 회수를 보장할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의 경쟁력도 향상시키고 미국 항공사들이 멕시코 시장을 잠식하는 것도 막을 수 있다”라고 Booth는 말하였다.

멕시코 법률상 독점은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집행하기 위해 1993년 CFC가 설립되었다.

■ '99. 3. 16, Financial Times